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52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김준형·한정애·정춘생

서왕진 • 박은정 • 이해민

신장식 • 박지원 • 이준석

한창민 · 전종덕 · 천하람

조 국 · 용혜인 · 김재원

정혜경 • 윤종오 • 강경숙

이주영 · 김종민 · 황운하

차규근 · 김선민 의원

(2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비 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 한 차별에 해당함. 또한 국회법 제·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원 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도 발견되지 않음.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삭제 등).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4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위원회 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	제4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②제4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u>및 제2항</u>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	
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	
에서 선거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u><삭 제></u>
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	
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⑥ <u>제1항, 제2항 및 제4항</u>
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